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2009. 5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9534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개시 및 재개시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지식경제부령에 반영하고,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을 250킬로그램 이상에서 500킬로그램 이상으로 합

리화하며, 변경허가대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가스설비 중 중요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의 경우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이하 KS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가스용품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가스용품에 대해서만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며,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조치 및 가스시설의 안전화보를 위해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3

년에 1회로 정례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4항)
 -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을 250킬로그램 이상에서 500킬로그램 이상으로 합리화
 - 나.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변경허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안 제6조)
 - 변경허가 대상을 가스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에서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및 기화장치 등 중요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로 합리화
 - 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휴지 등의 신고 규정 개정(안 제15조)
 - 법 제7조 “휴지 등의 신고”가 “사업 개시 등의 신고”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5조에 사업 개시 및 재개시의 신고 등 법 개정 내용 반영
 - 라. 집단공급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기준 합리화(안 제28조)
 - 집단공급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기준을 배관 길이 20미터 이상의 교체나 증설 등의 공사에서 배관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체나 증설 등으로 합리화
 - 마. KS인증 가스용품 중 검사의 일부 생략 가능한 대상 및 검사의 종류 규정(안 제36조 및 별표 7의2)
 -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설계단계검사는 의무화 하고, 생산단계검사는 압력조정기, 배관용 밸브 등 일부 가스용품에 대해서만 의무화
 - 바. 가스전용 운반자동차 소유 관련 규정 명화화(안 규칙 별표 3 및 별표 6)
 -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용기운반 자동차 및 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확보.
 - 다만, 추가로 필요시 위탁운송(벌크로리) 및 임대(판매사업자의 용기운반자동차)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위탁운송주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
 - 사.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에 역화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안 규칙 별표 15)
 -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역화방지장치 설치)를 마련하도록 규정
 - 아.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안 규칙 별표 22)
 -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 받도록 하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에 1회로 정례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 (정의)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제2조 (정의) ④ —————— ————— ————— 1. —————— ————— <u>500킬로그램</u>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내용적(内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u>250 킬로그램</u> 2. (생 략) ⑤ (생 략)	제6조 (변경허가 사항) 법 제3조제3항과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 략) 4. 저장설비나 <u>가스설비의 위치 변경</u> 5. (생 략) 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용량 증가나 <u>가스설비의 수량증가</u> 7.~9. (생 략)
제15조 (<u>사업휴지 등의 신고</u>)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의 휴지(休止)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지나 폐지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u>휴지·폐지신고서</u> 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u>사업개시 등의 신고</u>) —————— —————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중지·폐지 또는 재개 —————— ————— <u>개시·중지·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u> —————— —————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① —————— ————— —————

현 행	개정안
<p>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p> <p>1.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공급중지나 공급제한을 명령하고, 수요자에게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것</p> <p>가. · 나. (생 략)</p> <p>다. 가스온수기 및 가스보일러의 설치가 <u>별표 15 제14호의 연소기 의 설치방법</u>을 위반한 경우</p> <p>2. (생 략)</p> <p>②~⑤ (생 략)</p> <p>제28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생 략)</p> <p>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제6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p> <p>가. · 나. (생 략)</p> <p>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官經)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신 설></p> <p>라. (생 략)</p> <p>제52조 (보험가입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p>	<p>_____</p> <p>1. _____ _____ _____ _____</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_____ -----제1호가목5)의 연소기 기준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28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_____ ----- ----- 다만, 집단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5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로 한다.</p> <p>라. (현행과 같음)</p> <p>제52조 (보험가입 등)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p>



법규 및 정책동향

현 행	개정안
<p>가. (생 략)</p> <p>나. <u>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와 소비 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u></p> <p>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p> <p>2)~5)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53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p> <p>1.~4. (생 략)</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p> <p>가~마. (생 략)</p> <p>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사</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와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u></p> <p>1) <u>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와 용기 가스 소 비 자</u></p> <p>2)~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3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p> <p>1.~4. (현행과 같음)</p> <p>5. ----- ----- 가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국가유공자 등과 보호자[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후 1회 변경된 명의의 승용자동차에 한함) -----</p> <p>가~마. (현행과 같음)</p> <p>6. -----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승용</p>

현 행	개정안
<p>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 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종 1대</p> <p>7. (생략) 제55조 (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4와 같다. <신설></p> <p>② (생략)</p> <p>[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33조제4항제1호 관련)</p> <p>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충전 가. 시설기준 1)~7) (생략) 8) 부대설비기준 가)~마) (생략) 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확보할 것</p>	<p>자동차(장애인이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후 1회 변경된 명의의 승용자동차에 한함)————</p> <p>7. (현행과 같음) 제55조 (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 ———— ———— ———— —.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33조제4항제1호 관련)</p> <p>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충전 가. 시설기준 1)~7) (현행과 같음) 8) 부대설비기준 가)~마) (현행과 같음) 바)———— ————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p>



법규 및 정책동향

현 행	개정안
<p>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 운반자동차(“벌크로리”라 한다)를 보유할 것</p>	<p>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p> <p>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p> <p>①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며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만, 가스수급의 안정 및 운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위탁운송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위탁운송은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p> <p>(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p> <p>(2)벌크로리 10대 이상 보유(벌크로리에는 위탁운송사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p> <p>(3)별표 22제4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은 자가 가스공급</p> <p>(4)영 별표 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별표 22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p>

현 행	개정안
	<p><u>한 자를 고용할 것(고용인원은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을 준용하되, 이 경우 저장능력은 “벌크로리 총 충전량”으로 본다)</u></p> <p><u>②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u></p> <p><u>③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 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로 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 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 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 지 별표 5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 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u></p> <p><u>$G = V/C$</u></p> <p><u>여기에서</u></p> <p><u>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u></p> <p><u>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u></p> <p><u>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u></p> <p>나. 기술기준</p> <p>1)~4) (생 략)</p> <p>5) 그 밖의 기준</p> <p>가)~나) (생 략)</p> <p>〈 신 설 〉</p> <p>나. 기술기준</p> <p>1)~4) (생 략)</p> <p>5) 그 밖의 기준</p> <p>가)~나) (생 략)</p> <p>다)가목8)사)①에 따른 운송을 위탁한 사업자와 위탁운송을 하는 자는 다음 의 기준을 준수할 것</p> <p>① 운송을 위탁한 사업자는 수요자시 설에 대하여 ②의 경우를 제외한 법 제11조 및 법 제23조 등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p> <p>② 위탁운송을 하는 자는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 가스공급시 나목2)하)</p>



현 행	개정안
<p>다. (생 략)</p> <p>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u>< 신 설 ></u></p> <p> 1) (생 략)</p> <p> 2) (생 략) <u>< 신 설 ></u></p> <p>2. 자동차용기 충전</p> <p>가. 시설기준</p> <p> 1)~4) (생 략)</p> <p> 5)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그 충전소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사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p> <p> 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p> <p> 나)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p> <p> 다) 충전소의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p> <p> 라)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p> <p> 마)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p>	<p>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위탁운송을 하는 자가 벌크로리를 보유하지 않은 용기충전사업자나 판매 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받아 위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을 위탁한 자와 더불어 위탁운송을 한 자도 법 제3조에 따른 허기를 받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p> <p>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p> <p> 가) (현행과 같음)</p> <p> 나) (현행과 같음)</p> <p>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p> <p>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그 진단 및 평가 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p> <p>2. 자동차용기 충전</p> <p>가. 시설기준</p> <p> 1)~4) (생 략)</p> <p> 5) _____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_____</p> <p> 가) _____</p> <p> 나) _____</p> <p> 다) _____</p> <p> 라) (현행 바)와 같음)</p> <p> 마) 충전소 종사자의 숙소</p>

현 행	개정안
<u>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u> 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사)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m ² 이하의 식당 아)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m ² 이하의 창고 <u>〈 신 설 〉</u> <u>〈 신 설 〉</u>	바) (현행 사)와 같음) 사) (현행 아)와 같음) 아)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 자) (현행 마)와 같음) 차)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 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만을 말한다) <u>〈 삭 제 〉</u>
자) 그밖에 지식경제부정관이 충전소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6) 5)에서 허용한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밀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u>〈 신 설 〉</u> <u>〈 신 설 〉</u>	6) 5)바)부터 차)까지에 해당하는 ----- ----- ----- ----- ----- 7) 5)나)~다)~마)~바)~사) 및 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m ² 를 초과할 수 없다. 8) 자동차 제조사나 연구소에 설치되는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5)부터 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현행 7)과 같음)
나. (생 략)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나. (생 략) 다. 검사기준 1) ----- ----- -----



법규 및 정책동향

현 행		개정안	
할 것			
검사종류	검 사 항 목	검사종류	검 사 항 목
가) 안전성확인	(생 략)	가) 안전성확인	(현행과 같음)
나) 완성검사	(생 략)	나) 완성검사	(현행과 같음)
다) 정기검사	① (생 략)	다) 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기록1)가)부터 다)까지 · 1)마)부터 차)까지 · 1)파) · 1)거) · 2)가) · 2)나) · 2)라)부터 하)까지 · 3)가)부터 다)까지 · 3)마)부터 아)까지 · 3)차) · 4) · 5)와 제2호나목1)은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② _____ ---제1호나목---
라) 수시검사	(생 략)	라) 수시검사	(현행과 같음)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가. · 나.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검사기준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 · 완성검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1)	
검사종류	검 사 항 목	검사종류	검 사 항 목
가) 안전성확인	(생 략)	가) 안전성확인	(현행과 같음)
나) 완성검사	(생 략)	나) 완성검사	(현행과 같음)
다) 정기검사	① (생 략)	다) 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기록1)가)부터 다)까지 · 1)마)부터 차)까지 · 1)파) · 1)거) · 1)너) · 2)가) · 2)나) · 2)라)부터 하)까지 · 3)가)부터 다)까지 · 3)마)부터 아)까지 · 3)차) · 4) · 5)와 제3호나목1) · 3)은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② _____ ---제1호나목---
라) 수시검사	(생 략)	라) 수시검사	(현행과 같음)
[별표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 저장소의 시설 · 기술 · 검사 · 정밀안전진단 · 안전성평가 기준(제10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3조제4항제2호 관련)			
1. (생 략)			
[별표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 저장소의 시설 · 기술 · 검사 · 정밀안전진단 · 안전성평가 기준(제10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3조제4항제2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p>2.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p> <p>나. 기술기준</p> <p>4) 그 밖에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다]부터 자)까지 ①하) · 2)가) · 2)나) · 2)마) · 2)바) · 3)가)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4)의 “집단 공급시설”은 “저장소시설”로 보고, 제1호나목5)의 “제1호나목”은 “제2호나목”으로 본다.</p> <p>[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 저장소의 시설 · 기술 · 검사기준(제10조제1항제3호 · 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29조제2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관련)</p> <p>1. 액화석유가스 판매</p> <p>가. 시설기준</p> <p>1)~4) (생 략)</p> <p>5) 부대설비기준</p> <p>가) · 나) (생 략)</p> <p>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p>	<p>2.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소</p> <p>나. 기술기준</p> <p>4) _____</p> <p>_____</p> <p>_____ 2)바)는 제외한다 _____</p> <p>_____ 제1호나목3)가) · 4)의 _____</p> <p>_____</p> <p>_____</p> <p>[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 저장소의 시설 · 기술 · 검사기준(제10조제1항제3호 · 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29조제2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관련)</p> <p>1. 액화석유가스 판매</p> <p>가. 시설기준</p> <p>1)~4) (현행과 같음)</p> <p>5) 부대설비기준</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판매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 물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 · 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만, 계절적 수요 증가 등으로 가스수급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용기전용 운반차량에는 임대를 한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p>



현 행	개정안
<p>라) 판매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 물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의 가스전용 운반자동차(4륜차 이상)를 확보할 것. 다만,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5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단위:m)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p> $G = V/C$ <p>여기에서</p> <p>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p> <p>V: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내용적(단위:L)</p> <p>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p>	<p>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p> <p>라)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p> <p>마)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p> <p>① 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며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만, 가스수급의 안정 및 운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위탁운송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위탁운송은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p> <p>(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p> <p>(2)벌크로리 10대 이상 보유(벌크로리에는 위탁운송사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p> <p>(3)별표 22제4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은 자가 가스공급</p>

현 행	개정안
	<p>(4) 영 별표 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 22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고용할 것(고용인원은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준용하되, 이 경우 저장능력은 “벌크로리 총 충전량”으로 본다)</p> <p>②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p> <p>③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로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 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5 제1호 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p> $G = V/C$ <p>여기에서</p> <p>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p> <p>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p> <p>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p> <p>6)~8) (생 략)</p> <p>나. 기술기준</p> <p>1)~3) (생 략)</p> <p>〈 신 설 〉</p> <p>6)~8) (현행과 같음)</p> <p>나. 기술기준</p> <p>1)~3) (생 략)</p> <p>4) 그 밖의 기준</p> <p>가목5)마)①에 따른 운송을 위탁한 사업자와 위탁운송을 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p> <p>가) 운송을 위탁한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에 대하여 나)의 경우를 제외한</p>



현 행	개정안
	<p>법 제11조 및 법 제23조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의무를 부담 한다.</p> <p>나) 위탁운송을 하는 자는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 가스공급시 나목2)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다) 위탁운송을 하는 자가 벌크로리를 보유하지 않은 판매사업자나 용기 충전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받아 위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을 위탁한 자와 더불어 위탁운송을 한 자도 법 제3조에 따른 허기를 받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p>
<p>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p> <p>가. 시설기준</p> <p>1)~3) (생 략)</p> <p>4) 그 밖에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나)·2)라) 후단·5)나)·5)다)·5)마)·7)·8)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5)라) 중 “판매업소”는 “영업소”로 보고, 6) 중 “판매시설”은 “영업소시설”로 본다.</p> <p>나. 기술기준</p> <p>영업소 용기저장소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p> <p>[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9조 및 제50조제8항 관련)</p> <p>8) 표시기준</p> <p>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p>	<p>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p> <p>가. 시설기준</p> <p>1)~3) (현행과 같음)</p> <p>4) _____</p> <p>_____ 5)마) _____</p> <p>_____</p> <p>5)다) _____</p> <p>_____</p> <p>_____.</p> <p>나. 기술기준</p> <p>_____</p> <p>---제1호나목[2) 및 4)는 제외한다]의</p> <p>_____</p> <p>[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9조 및 제50조제8항 관련)</p> <p>8) 표시기준</p> <p>_____</p> <p>_____</p>

현 행	개정안
<p>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단서 신설></p> <p>다. 검사기준 1) · 2) (생 략) <신설></p>	<p>-----</p> <p>-----</p> <p>-----</p> <p>----- 다만, 저장능력이 100kg 이하인 용기에 의한 시설과 용기보관실이 설치된 시설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다. 검사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은 검사범위를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p>
<p>[별표 20]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43조 관련)</p> <p>1. (생 략) 2. 용기로의 공급기준 가. · 나 (생 략) 다.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리 1) (생 략) <신설></p> <p>2) (생 략) 라. 계약의 해지와 공급설비의 철거 1) 용기가스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의 해</p>	<p>[별표 20]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4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용기로의 공급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리 1) (현행과 같음) 2) 공급설비 중 용기가 용기가스소비자 소유의 경우 가스공급자는 용기의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용기가스 소비자에게 용기를 시가상당액으로 판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현행 2)와 같음) 라. 계약의 해지와 공급설비의 철거 1) -----</p>



현 행	개정안
<p>지를 요청하면 가스공급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용기ガ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 및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공급설비를 철거·수거하되, 공급설비가 용기ガ스소비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상당액을 지불하여야 한다.</p> <p>2) · 3) (생략)</p> <p>4) 3)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용기ガ스소비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p>	<p>철거·수거하고, 배관의 막음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p> <p>2) · 3) (현행과 같음)</p> <p>4) 3)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용기ガ스소비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정한 방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기ガ스소비자에게 신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공급자가 원하는 경우 이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할 수 있다.</p>
<p>3.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 공급기준</p> <p>가. 공급계약의 체결과 해지</p> <p>1) · 2) (생략)</p> <p>3)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p> <p>가) (생략)</p> <p>나) 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철거 요구가 있고 설치비용의 보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그 시설을 자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p>	<p>3.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 공급기준</p> <p>가. 공급계약의 체결과 해지</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철거하고, 배관 막음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별표 22] 안전교육 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22] 안전교육 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현 행			개정안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가.전문교육 (내용 생략)		신규증사 후 6월 이내 및 제도변경,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 환경변화로 안 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 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가.전문교육 (현행과 같음)		--- 그 후 매 3년이 되 는 해마다 1회
나.특별교육 (내용 생략)		(내용 생략)	나.특별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양성교육 (내용 생략)			다.양성교육 (현행과 같음)		
비 고			비 고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별표 2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2조제3항 관련)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2호가목 단서의 경우 외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과 부상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금액			가. 사망과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하되, 용기ガ스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용기ガ스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가목 단서의 경우 외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의 경우에는 1명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가.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나. 부상의 경우에는 1명당 「고압가스 안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3억원. 다만 소		



법규 및 정책동향

현 행	개정안		
<p><u>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제1호</u> <u>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u></p> <p><u>다.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끝난 후 그</u> <u>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u> <u>“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u> <u>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후유장애급별</u> <u>보험금액</u></p> <p><u>라.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u> <u>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과</u> <u>나목의 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u></p> <p><u>마. 부상한 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u> <u>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나목</u> <u>의 금액과 다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u> <u>액</u></p> <p><u>바. 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u> <u>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의</u> <u>금액에서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u></p> <p><u>사.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3억원</u></p>	<p><u>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u> <u>하는 소비자와 용기ガ스소비자의 과</u> <u>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피해에 대하</u> <u>여는 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u> <u>금액을 줄일 수 있다.</u></p>		
[별표 24]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55조제1항 관련)			
보고자와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서식	보고기한
1. (생 략) 가. (생 략)	한국가스 안전공사	(생 략)	(생 략)
나. (생 략)	한국가스 안전공사	(생 략)	(생 략)
2. (생 략) 가. (생 략)	한국가스 안전공사	(생 략)	(생 략)
나. (생 략)	한국가스 안전공사	(생 략)	(생 략)
[별표 24]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55조제1항 관련)			
보고자와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서식	보고기한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영 제10조 제1항 제1 호의 액화 석유 가스 총 전 산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자단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영 제10조 제1항 제4 호의 액화 석유 가스 판 매 사 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자단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p><u>3. 보고자는 직접 또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할 수 있다.</u></p> <p><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시·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대하여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도 알려야 한다.</u></p>	<p>〈 삭제 〉</p> <p><u>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는</u></p>
<p><u>비 고</u></p> <p><u>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를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u></p>	<p>비 고</p> <p><u>1. _____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단체에 보고를 할 때</u></p>
<p><u>2 (생 략)</u></p> <p>부 칙 < 지식경제부령 제9호, '08. 4. 17> 제1조~제4조 (생 략) 제5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p> <p><u>①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충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별표 4 제1호가목(1)·(2)(다)·2)(바)·(6)·마목, 별표 5 제1호나목(2), 별표 7 제1호가목(3), 볏표 18 제5호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p> <p><u><단서 신설></u></p>	<p><u>2 (현행과 같음)</u></p> <p>부 칙 < 지식경제부령 제9호, '08. 4. 17> 제1조~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p> <p><u>① _____</u></p> <p>----- . 다만,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p>



현 행	개정안
<p>②~⑯ (생 략)</p> <p>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19호, '08. 7. 18> 제1조~제 4조 (생 략)</p> <p>제5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 가스용품 제조시설 · 집단공급시설 · 판매시설 · 저장소시설 · 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u><단서 신설></u></p>	<p><u>특정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종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5제1호가목4라)①의 본문에 적합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⑯ (현행과 같음)</p> <p>부 칙 <지식경제부령 제19호, '08. 7. 18> 제1조~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p> <p>—————</p> <p>—————</p> <p>—————</p> <p>—————</p> <p>—————</p> <p>—————</p> <p>—————</p> <p>—————</p> <p>————— . 다만, 사용시설에 설치된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로서 용기에 직접연결하여 사용하는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p>
<u>개정안</u>	
<u>부 칙</u>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보상범위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p> <p>② 별표 20제2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정된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는 안전공급계약 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 경과조치)</p> <p>이 규칙 시행전에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모델~형식 또는</p>	

개정안

규격의 제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7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다음 각 호의 시기 이전에 별표 7제3호나목1)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모델·형식 또는 규격의 제품 :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1년 1월 1일 이후 2009년 9월 25일 이전에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모델·형식 또는 규격의 제품 :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 중 별표 3제1호가목8)바) 및 사)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제2호 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판매시설 중 별표 6제1호가목5)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용시설은 별표 15제1호가목9)바)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7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합격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자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22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을 받은 자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3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